

붙임1

영 종 오 렌 지 골 프 장 개 발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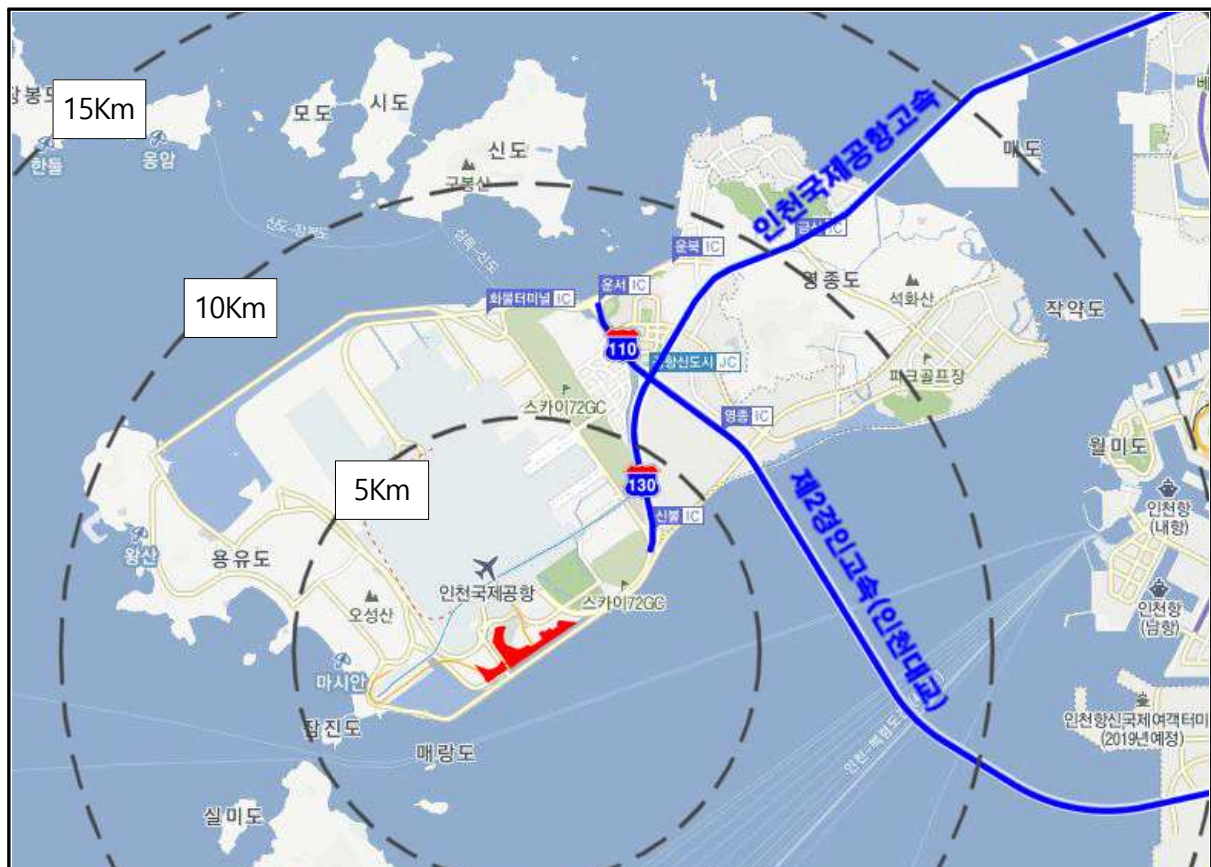
2018. 3

(주)오렌지엔지니어링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지구는 인천국제공항 내 유희부지로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공항 인근 경관개선 및 복합리조트와의 시너지효과 유발은 물론 신규 환승객 등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국제업무지역 활성화를 통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림 1.1-1) 위치도

제2장 실시근거

2.1 환경영향평가 및 준비서 실시근거

본 사업은 부지면적 821,952.3m²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대상범위인 25만m² 이상에 해당되어, 동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였다.

〈표 2.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사업지구 면적	821,952.3m ²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8. 2, 환경부

〈표 2.1-2〉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실시근거

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8. 2, 환경부

2.2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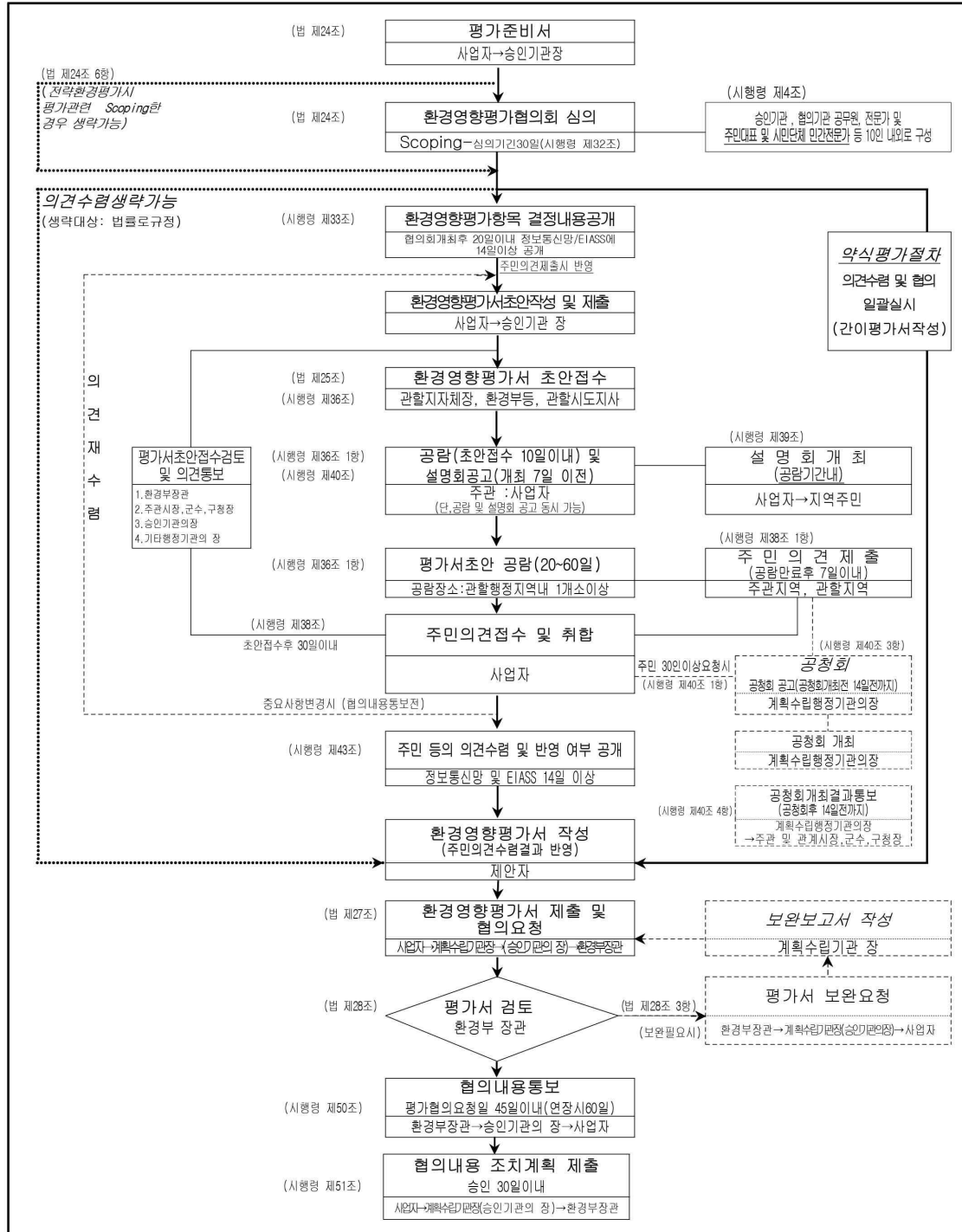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8. 2, 환경부

2.3 사업의 추진경위

- 2017. 04. 20 :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대중제골프장 개발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인천국제공항공사)
- 2017. 05. 11 :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대중제골프장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2017. 07. 19 : 사업제안서 접수
- 2017. 07. 28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주)영종오렌지 우선협상 대상자]
- 2017. 09. 12 ~ 12. 28 : 제1국제업무지역 대중제 골프장 개발사업 실시협약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영종오렌지]
- 2018. 03. 12 ~ 03. 21 : 협의회 심의



(그림 2.3-1) 환경영향평가 업무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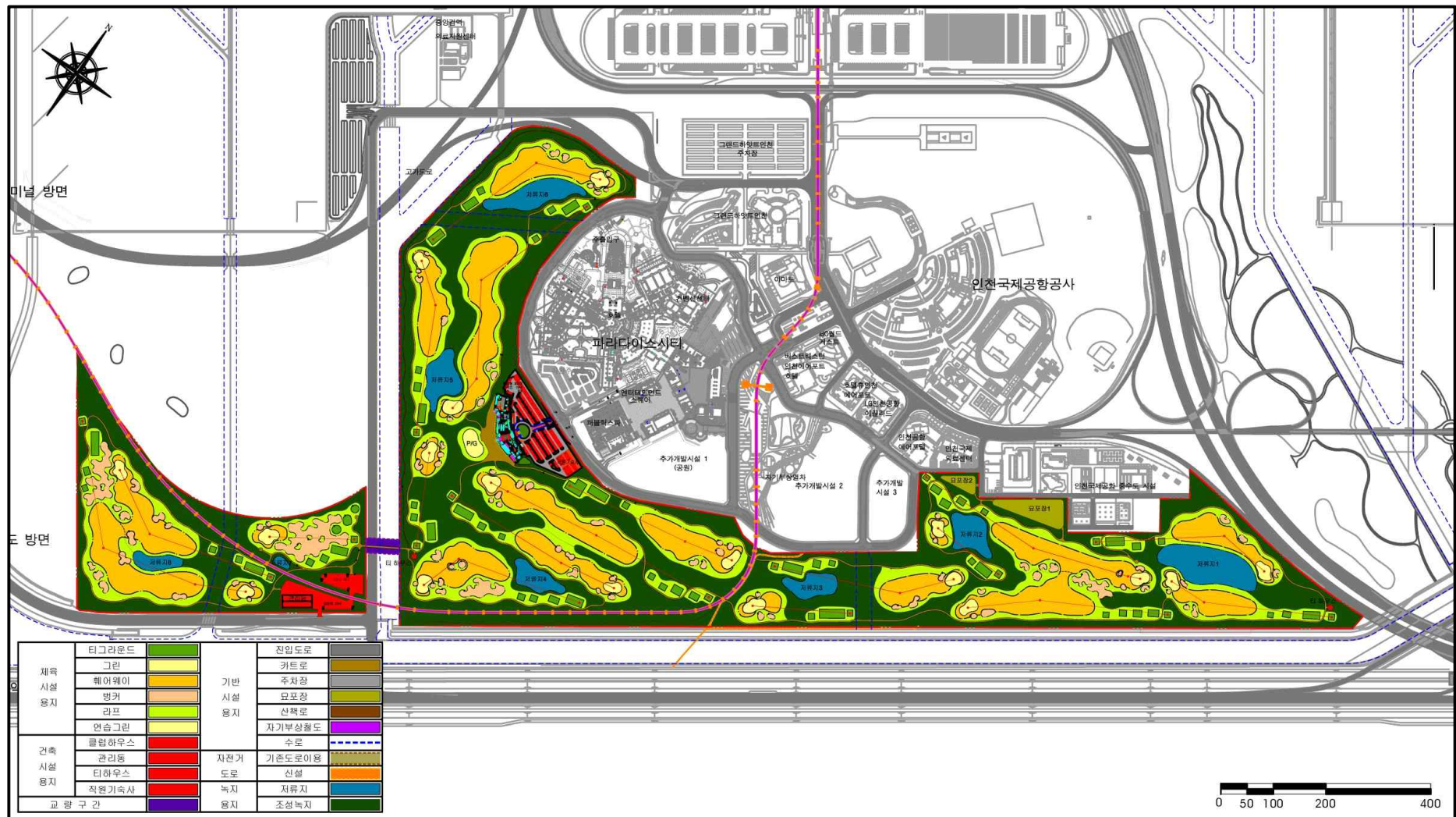
2.4 사업의 내용

- 사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5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주)오렌지엔지니어링
- 사업 면 적 : 약 821,952.3m² (골프장지역 820,380.3m², 교량지역 1,572m²)
경제자유구역 659,921.3m² (약 80.3%), 경제자유구역외 162,031m² (약 19.7%)

〈표 2.4-1〉

토지이용계획

구 분			시설내역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	821,952.3	-		
골프장			72par / 6,545m	820,380.3	100.00		
체육 시설 용지	소 계		-	371,955	45.34		
	티		74개소	21,509	2.62		
	그	린	18개소	17,126	2.09		
	병	커	91개소	28,655	3.49		
	폐 어 웨 이		-	158,142	19.28		
	러	프	-	144,844	17.66		
	연 습 그 린		1개소	1,679	0.20		
건축 시설 용지	소 계		-	20,503	2.50		
	클 럽 하 우 스		1개동	8,450	1.03		
	티 하 우 스		2개동	433	0.05		
	관 리 동		1개동	9,859	1.20	직원주차 포함(62대)	
	직 원 기 숙 사		1개동	1,761	0.21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	79,439	9.68		
	진 입 도 로		L=20m, B=13.5m	279	0.03		
	카 트 로		L=9,558m, B=2.7m	26,086	3.18		
	주 차 장		310대	12,450	1.52	장애인 포함(10대)	
	묘 포 장		2개소	6,947	0.85		
	산 책 로		L=2,444m, B=1.2m	2,922	0.36	카트로 119m 이용	
	자 전 거 도 로		L=605m, B=3.0m	1,895	0.23	자기부상철도 관리도로118m 이용	
	기존 시설 물	자 전 거 도 로		L=912m, B=3.0m	2,652	0.32	
		자기부상철도		L=1,594m, B=4.5m	7,338	0.89	
수 로			L=678m, B=26~30m	18,870	2.30		
녹지 용지	소 계		-	348,483.3	42.48		
	조 성 녹 지		-	306,579.3	37.37		
	저 류 지		8개소	41,904	5.11		
교량구간			-	1,572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입체교차지역	



(그림 2.4-1)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2.4-2) 대상지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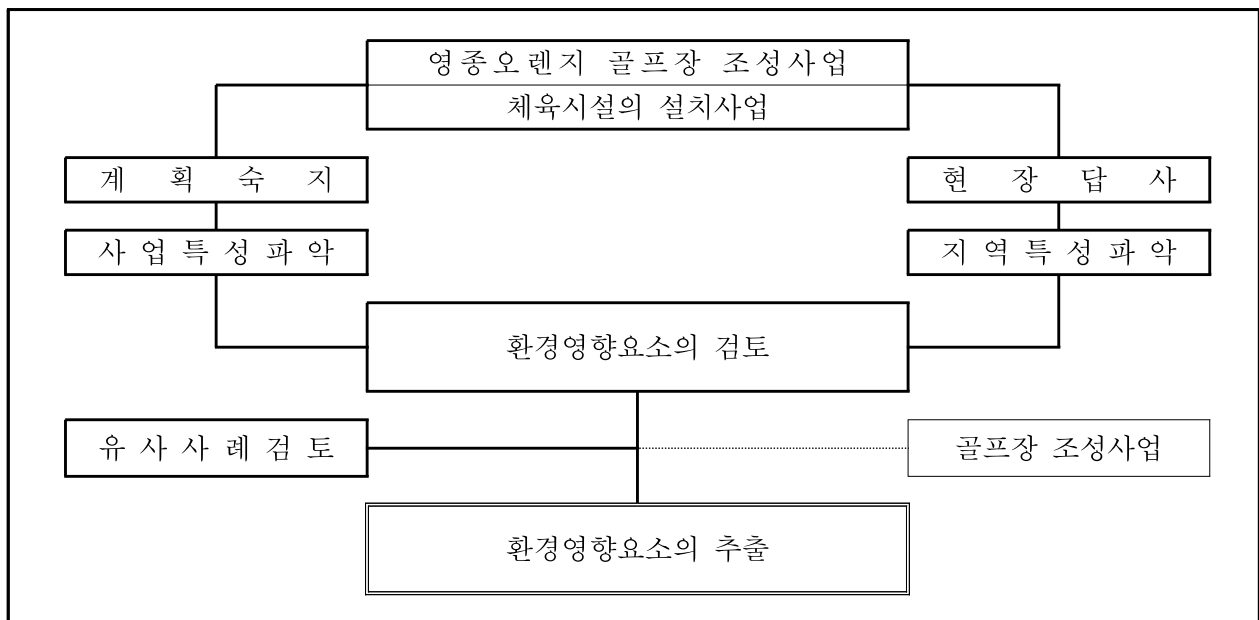
제3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3.1 평가항목의 설정

3.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사시 및 운영시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그림 3.1.1-1)의 절차에 따라 추출하였다.

사업의 개요와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숙지한 후, 현장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유사사업(체육시설의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과 현재까지의 검토 및 협의의견을 파악하였다.



(그림 3.1.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흐름도

<표 3.1.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공사 단계	운영 단계
○ 지형변화, 식생변화, 서식지 변화 등 ○ 토량의 부지내 이동 및 외부 유출입 ○ 비산먼지나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 ○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영향 ○ 공사에 따른 각종폐기물 발생	○ 토지이용의 변화 ○ 비점오염물질 변화 ○ 하류 하천의 수질변화 ○ 차량증가 및 에너지사용에 의한 변화 ○ 구조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

사업시행으로 예견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여 현황조사, 영향예측, 평가를 행하여야 할 중점평가항목(8개)을 선정하였고, 중점검토항목에 선정되지 않은 항목 중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일반검토항목(2개)으로, 사업지구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평가제외항목(10개)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세 부 항 목	기 상	지 표 수 질	토 지 이 용	동 · 식물 상	환경자원의 순환	인 구
	대 기 질	지 하 수 질	토 양	자연환경자산	소 음 · 진 동	주 거
	악 취	수 리 · 수 문	지 형 · 지 질	-	위 락	산 업
	온 실 가 스	해 양 환 경	-	-	경 관	-
	-	-	-	-	위생공중 보건	-
	-	-	-	-	전 파 장 해	-
	-	-	-	-	일 조 장 해	-

〈표 3.1.2-2〉 금회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해당 환경영향평가 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 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동·식물상	지형·지질	-	수질	기상	대기질	소음· 진동	토양	위락 경관	각항목별 환경기초 시설현황	친환경적 자원순환	친환경적 토지이용

환경영향요소			공 사 단 계					운 영 단 계				
평가항목			지장물	항타	토공	배수	인력	시설	오염원	폐기물	차량	도시화
기	상				△							
대	기	질	□	□	□						□	
수		질	□	□	○	○	△	△	○	△		△
토	지	이 용	■					■				■
지	형	· 지 질		□	□			△				
동		· 식 물 상		□	○	□	△	△	□	□	△	□
친환경적자원순환			○				△	△	△	□		△
소	음	· 진 동	○	○	□			△			□	△
위	락	· 경 관		△				□				
토		양			△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는 적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악영향이 다소있다(보통정도이다).

○ 악영향이 크다.

<표 3.1.2-4>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설정

구 분	항 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 평가항목 (8개)	대 기 질	•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 운영시 난방 및 차량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우려
	수 질	• 공사시 토공사에 따른 토사유입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 운영시 강우와 오염물에 의한 수량 및 수질변화 영향
	토 지 이 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와 이용상의 효율성 검토
	지 형 · 지 질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지질의 변화 • 지반의 안정성, 토사유출, 비옥토 손실, 사면 발생 등
	동 · 식 물 상	• 육상·육수생태계의 변화 예상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공사시 인부, 장비, 지장물, 건축시 등 각종폐기물 발생 • 운영시 인구, 건축물, 오폐수 등 각종폐기물 발생
	소 음 · 진 동	•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차량이용량 증가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위 락 · 경 관	• 골프장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변화
현황 조사항목 (2개)	기 상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토 양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현황 기초조사
평가 제외항목 (10개)	인 구 · 주 거	• 골프장 상주인구 및 이용인구의 증가는 있으나 영향은 미미
	일 조 장 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온 실 가 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악 취	• 악취유발 시설이 없음
	수 리 · 수 문	• 수질 부분에 포함하여 검토
	자 연 환 경 자 산	• 동·식물상 부분에 포함하여 검토
	해 양 환 경	• 수문이용으로 인해 해양 유출 없으며, 수질 및 동식물상 부분에 포함하여 검토
	위 생 · 공 중 보 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전 파 장 해	• 전파장해를 유발할 시설물의 설치가 없음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3.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할 것이며,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u>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u>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	---

3.2.1 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이며,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2.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도록 계획하였다.

3.2.3 관계기관 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서를 접수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3.3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3.3.1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사업면적은 821,952.3㎡이며, 평가 대상 면적은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평가 대상면적의 328.8%(821,952.3/250,000)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3.3.1-1>

약식평가절차 대상여부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u>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u>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 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4.1 심의 개요

- 심의 개최일 : 2018. 3. 12 ~ 2018. 3. 21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협의회 운영주체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협의회 구성

구 분	소속 / 부서	직위(직급)	성명	의견제출 여부
위원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박○○	○
위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주무관	최○○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장	유○○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주무관	안○○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김○○	○
	영종환경연합	대표	홍○○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	○
	인천발전연구원	기후환경센터장	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기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센터장	김○○	○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이○○	○



"우리는 인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서면) 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내 골프장(가칭 '영종오렌지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합니다.
- 아울러, 위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별도송부 된 평가준비서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붙임 2] 서식에 의거 심의의견을 **2018. 3. 21.(수)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기간 : 2018. 3. 9(금) ~ 3. 21.(수) / 9일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후 [붙임 2] 작성

다. 제출방법 : 온나라(공무원) 또는 e-메일(thgus1785@korea.kr/민간위원)

라. 위원현황 : 10명(위원장 1, 위원 9)

연번	협의회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 위	비고
1	위원장	공무원 박○○	경제청 환경복지과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과장	
2	위원	공무원 최○○	경제청 환경복지과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주무관	
3		공무원 유○○	시 환경정책과 (지방환경관서 소속공무원)	자연환경팀장	
4		공무원 민○○	경제청 영종관리과 (사업지역 관할 소속공무원)	주무관	
5		공무원 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주무관	
6		주민대표 홍○○	영종환경연합 (주민대표)	대표	
7		민간전문가 박○○	인천녹색연합 (시민단체 추천)	사무처장	
8		민간전문가 조○○	인천발전연구원 (민간전문가)	기후환경센터장	
9		민간전문가 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기반연구센터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센터장	
10		민간전문가 이○○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해당수산부 추천 해양전문가)	교수	

붙임 1. 위촉장(종이문서) 1부.

2. 협의회의결과 통보서(서식) 1부.

3.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요약) 1부.

4.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종이책자, 별도송부) 1부.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청(환경정책과)

주무관: 정소현, 보건의료담당: 김은수, 환경복지과장: 박병구, 전담: 2018. 3. 9

협조자:

시행: 환경복지과-3084 (2018. 3. 9.) 접수

우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트성하대로 175, 인천광역시경제자유

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복지과 보건위생팀(26층) (송도동) / http://www.ifez.go.kr/

전화번호 032-453-7943, 팩스번호 032-440-8778 / thgus1785@korea.kr / 비공개(6)

"출산하기 좋은 도시, 내 아이의 희망 인천"

(그림 4.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공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렌지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총괄 의견

- 사업지역은 인천국제공항 내 유희부지에 위치하여 사업개발에 따라 연안 및 사업지 주변 호텔, 병원, 공항 등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은 동 사업 추진 운영에 따라 동·식물서식지 및 주변시설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지역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설을 배치하도록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환경보전 방안 강구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공사 및 운영 중에 예상되는 모든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은 그 영향의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되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시간 두고 적정하게 정하도록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공고·공람 및 설명회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기존 지역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필요

2018. 3.

위원장 박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 총괄 의견

- 사업지역이 영종남단 갯벌이 인접한 곳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해양 및 갯벌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에 의거 대상지역 설정 필요

- 사업활동에 따른 평가항목별 부정적 환경영향 및 대책을 구체적 정량적 제시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역은 해안지역으로 사업전·후 직접적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양 및 갯벌 수질 및 해양물리, 갯벌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항목에 포함 범위 및 대상지역 설정
 - 평가대상지역 환경상황 조사를 통한 대상지역 설정
 -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식물 서식 현황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시설의 배치 및 사업규모의 축소등을 포함 대안을 설정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및 비교 실시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지역은 해안가에 위치 사업전·후 해양수질 및 해양물리, 저서생물 등 갯벌 생태계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항목에 포함 할 것
 - 영종 남단 갯벌은 도요물떼새등 많은 물새들이 서식지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문헌등 관련자료등을 통해 서식현황등 생태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업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
 - 사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하여 항목별로 제시하고 처리 및 저감대책을 정량적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그림 4.1-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16~2025)에 근거하여 평가항목 및 환경보전방안등 검토 반영
- 기타 공항등 주변 개발계획등의 전략 또는 환경영향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2018. 3. 21.

심의위원 최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내 유휴부지를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상위계획(2025년 인천광역시기본계획,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기본방향 및 관련계획의 부합성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제시하여야 하고,
- 운영 시 골프장 농약사용, 인공조명 설치에 의한 피해 영향을 예측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제시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 시 골프장 맹독성, 고독성 농약사용에 따른 초기강우에 대한 주변 영향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1km이상) 필요하며, 인공조명(공간조명) 설치에 따른 주거지역 등 빛공해 영향 대상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2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2-1)

(그림 4.1-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골프장 운영 시 초기강우에 의한 유수지 수환경영향 추가 설정 필요.
- 운영 시 인공조명(공간조명) 설치에 따른 주거지역 등 빛공해 피해 영향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영향 대상범위, 평가방법 등을 추가 설정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등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사업규모가 약식평가 대상여부 검토기준 이상이므로 약식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

-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2018. 3.

심의위원 유 (인)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픈지골프장 개발사업)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내 유휴부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근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비롯한 호텔, 병원 등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사업 지구내 토양과 지하수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주변 해양의 갯벌과 유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심의 의견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공사시, 운영시)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지구 및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공사 시에는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과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운영시에는 토양과 지하수 관리 등의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설정에서 본 개발 사업 후 운영 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변화 추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지 및 주변 지역의 지하수의 농약물질 검출 검사 등을 통해 주변 지역 유수지 및 해양의 영향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p15, 유수지 100m이내, 해양 300m이내 소재
 - * 주변 해양(갯벌)은 지역 주민이 조개 채취 등 어류 활동을 하고 있음

(그림 4.1-4)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 사업지구의 인접 지역에는 영종남단 갯벌과 그 곳에 서식하는 조류를 조사하고 영향권역 포함 여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현재 호텔 투숙객등의 산책로(운동)로도 이용되어지고 있어 사업 시행전 주민 설명회 등을 포함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 규모가 약식 평가 사업에 해당 되지 않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사업지구 인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주변 개발 현황과 기존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 사업에 반영이 필요함.

2018. 3 . 21 .

심의위원 안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 총 팔 의 건

- 동·식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서식지 등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골프코스 등의 입지 변경, 규모 축소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 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그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고,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등에 사용할 기법 제시
- 동·식물의 경우 서식지 환경, 활동 반경, 계절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에 대한 범위 설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흙을 설계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지구는 주변 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이 환경 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함.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확보, 흙 및 건축물 배치, 차폐녹지 조성 등 고려하여야 함.
-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은 자연환경 및 지형변화 등을 토대로 토지 이용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되,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와 환경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법적보호종 등)과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분석·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파악하고 영향(대기, 소음·진동, 경관 등)예측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서 조사된 희귀식물, 멸종위기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그림 4.1-5)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 동·식물조사는 확인중에 대한 주요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측·분석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대책 수립·제시
 - 본 사업지구는 해양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바,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수질, 해양저질, 해양 동·식물상 영향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비행기 소음에 따른 골프장 이용자의 영향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로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인근 지역 지하수 사용현황, 급수계획, 오수처리계획(발생량, 처리기준·방법 등), 관개용수 사용계획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야간조명 사용여부를 제시하고, 야간 조명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정온시설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야 함.
 -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인근 마을 등)에서의 경관영향, 사업지구 내부 주요건축물에서 경관영향을 분석을 제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황조사 지점,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고,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지점(도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이 우려되는 분야는 충분한 설명 및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
- 동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92년 협의)」 부지 내에 위치하므로, 동 사업시행 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등의 대상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2018. 3. 21.

심의위원 김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렌지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총괄 의견

- 골프장 특성상 페어웨이와 러프 등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이 바람의 영향으로 공항과 주민들에게 피해줄 것으로 생각하며, 바다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이필요할 듯하다. 야간 라이트시설 기준을 지켜 생물과 곤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 골프장을 운영시 주민 사용료에 대해선 타 지역과 동등하게 적용해야할 것이며, 영종지역 건설사 참여를 권장하며, 이들은 애함심으로 인해 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지역 고용창출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 무난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적절한 법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최선책으로 본다.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골프장 농약, 비료 사용에 대한 여부가 부족해 보인다. 카트 사용 에너지에 대한 미비.
 - 토사반입 등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면 한다.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총괄의견에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야간 라이트시설 기준을 지켜 생물과 곤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 행 정 사 항 (승인기관, 사업자)

2018. 3. 21

심의위원 홍

(그림 4.1-6)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의견

○ 영종도는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로 사업대상지가 멸종위기조류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최소 1년 이상 반드시 현지조사해야 함. 그 영향권도 반경 1k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조사 및 자료 결과 멸종위기조류의 먹이터, 휴식터로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인천은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임. 그 중에서도 영종도는 중요한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사업대상지가 멸종위기조류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현지조사해야 함. 공사 과정과 골프장 운영시 조류 이동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향권을 반경 1km로 확대해야 함.

2. 환경보전방안

- 최소 반경 1km 이내가 멸종위기 조류 먹이터, 휴식터로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방안 마련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에서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최소 1년 이상 반드시 현지조사해야 함. 또한 영종도 및 인천지역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에 요청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6. 기타

2018. 3. 21.

심의위원 박

<2쪽의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렌지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총괄의견

- 공항 내 유희부지 활용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 연안부에 인접한 매립부지라는 점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특히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2002년 11월부터 2년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 영종갯벌의 인접부지라는 점에 유의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적으로 민감지역이므로 동식물상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지형지질, 소음진동의 경우, 발파공사가 포함될 경우 현재의 평가대상 지역은 확대함이 적절해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인천기상대에서 관측하는 기상자료 특성과 상이한 국지적 기상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기상요인과 관련되는 제반 환경인자에 대한 환경영향의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지기상 검토(또는 시뮬레이션)나 공항기상자료 확보 등 환경영향 분석과 활용에 유의
- 골프장 내 잔디 관개용수 등의 다양한 용도의 용수공급(광역상수도 또는 지하관정, 중수도 등) 계획에 연동한 우수배제 및 하수처리, 방류계획에 따른 인근 수환경에의 환경영향 등 평가와 저감방안 강구
- 야간조명 설치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영향과 인근지역과 시설에의 빛공해 차원의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골프장 조성(발파 및 지형변화 가능성)과 운영(농약 및 시비 등)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 외에 지질과 지하수에 관한 검토 불가피

(그림 4.1-7)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2쪽의 2

○ 우수 배수체계와 저류지 용량,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강우 또는 폭우시, 침사 또는 유해성분의 외부유출 최소화 여부 확인 및 저감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항부지 내 부지에서의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간범위에 따라 인근 주민의 대상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근 주민 외에 인근시설 이용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공지되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계획대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18. 3. 21.

심의위원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렌지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총 팔 의 건

○ 본 건은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하천, 저류지)로 평가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영향 평가 및 예측을 실시하고, 해역에 대한 간접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야 함. 저류지의 환경관리 방안의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각 저감시설 효과와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지구의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일부 오염물질은 사업지 서쪽에 위치한 저류지로 배출되고 저류지 관리 상황에 따라 해역으로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저류지에 대한 오염물질 부하는 저류지의 수질과 퇴적물 환경 변화가 우려되므로 저류지 수질 예측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는 해역을 평가대상지역에 포함을 검토하기 바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지구가 해안에 접해 있고, 고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사 및 운영시 토사, 비점오염물질, 농약 등의 수계 유입 억제를 위하여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접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류지 수질 관리계획의 검토(관리 주체 및 관리 수질 설정 여부 확인 등 포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공사시 토사에 의한 하천 및 저류지 수질 변화 예측과 저감시설에 의한 저감 효과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의한 오염물질이 하천, 저류지, 해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절하게 각 수계에 정점을 설정하고, 계절별로 유기물, 부영양화물질, 농약 등을 포함한 환경기준 항목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그림 4.1-8)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 특히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우시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함.

○ 오염물질 수계 유입 저감시설의 관리를 위한 실효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없음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없음

2018. 3. 21.

심의위원 김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렌지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총괄의견

○ 평가항목에서 해양부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외하였음

- 골프장에서 유출된 물은 최종적으로 유수지로 유입되고 유수지의 해양배출은 없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영향은 미고려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양부문을 적어도 '현황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외 여부 검토

- 유수지 해양배출이 폭우 등 어떤 경우에도 없는지 확인 필요 (간헐적 배출 고려)

- 해안에 인접한 수로 및 유수지로부터 해양(조간대)로의 지하수 유입이 없는지 (지하수 영향고려)

- 골프장이 약 2.5km에 걸쳐 해안선으로부터 약200m 이격하여 건설되므로 육상과 해상의 이동성 생물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자연생태 영향 고려)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수환경(해양환경 포함)의 경우 직접영향권을 고려하여 500m 대상지역 설정 적절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기초성지에 입지하므로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없어 보임.
가능하다면 해안을 따라 조성되는 조성녹지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총괄의견 참조 바람

○ 제시된 평가준비서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 예측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부족. 특히 '현지조사'와 '모델'의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 필요

(그림 4.1-9)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국제공항 IBC-1구역 영종오렌지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2018. 3. 20. 심의위원 이 _____	
---	--

(그림 4.1-10)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